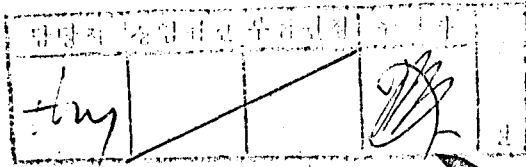


제 731 호
1979. 9.20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김 상 천
편집 : 문화공보관 김 인 동
전화 75-7834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전화 75-6090



시 보

차 례

◎ 교 시

제 402 호 :	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및 지적승인.....	3
제 403 호 :	도시계획사업 (공원내운동장) 시행허가.....	3
제 404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실시계획인가일부변경.....	4
제 405 호 :	도시계획사업 (서울대공원건설) 실시계획인가.....	5
제 406 호 :	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.....	6
제 407 호 :	도시계획사업 (전기공급설비) 시행허가.....	7
제 408 호 :	도시계획시설 (도로 , 공공의청사 , 공공공지) 변경 , 결정 및 지적승인.....	7
제 409 호 :	도시계획시설 (하천및도로) 결정및 변경과지적승인.....	8
제 410 호 :	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.....	9
제 411 호 :	도시계획사업 (도로및하수도) 실시인가.....	10
제 412 호 :	도시계획시설 (시장) 결정.....	10

<이면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제 413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..... 11

◎ 공 고

제 308 호 : 도시계획사업 (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) 시행공람공고..... 15

제 311 호 :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에정지지정공고..... 20

제 312 호 :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..... 20

제 314 호 : 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..... 20

제 315 호 : 도시계획사업완료공고..... 22

제 316 호 : 도시계획사업완료공고..... 22

제 49 호 (교육위원회공고) : 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공고..... 23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02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
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도로)
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12 조 및

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
('77.3.16) 의 권한위임사항에 따
라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지적승인
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마과
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
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9.12

서울특별시장

○ 노선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 고
기정	소로	3		6	40	오류동 41-1	오류동 13-54	
변경	"	"		"	"	"	"	위치변경
기정	"	2		8	83	성산동 572-121	서교동 247-90	
변경	"	"		"	"	"	"	위치변경

별첨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03 호

도시계획사업 (공원내운동장)
시행허가

1. 건설부고시제 138 호 (77.7.9) 로
도시계획시설 (공원) 로 결정에 대
하여 도시계획법제 24 조 및 건설
부 고시제 41 호 (77.3.16) 규정에
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
(공원내운동장) 시행허가 하였기
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녹지국

공원과와 관악구청 녹지과 및 시민
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
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9.9.12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시행지 : 관악구 봉천동 산 174
-122
2. 사업의종류 및 명칭
종류 : 도시계획사업 (공원내운동장)
명칭 : 관악산 운동장조성

3. 사업규모 : 9,848.3㎡(2,979.11평)	착수년월일 : 허가일로부터 1월내
4. 사업시행자 : 서울시 서대문구 용암동 226-13 학교법인영락학원이사장 박조준	준공예정일 : '80.3.31
5.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	6. 위치 및 계획평면도 : 별첨
	7. 공사설계도면 : 별첨

o 토지조서

구분	필지수	면적		비고
		지적	편입면적	
임야	1	12,980 평	(9,848.3㎡) 2979.11평	

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	사용평수	소유자
			㎡	평		
관악구봉천동	산 174-12	임야	42,909	12,980	2979.11 평 (9,848.3㎡)	학교법인영락학원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04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실시계획
인가일부변경

인다.

1979.9

서울특별시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54 호(79.2.5)로 도시계획사업(학교)실시계획 인가된 구로동 신구로국교 용지에 대하여 일부 변경 인가를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(77.3.16)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, 시민 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

- 가. 사업시행지 : 영등포구 구로동 166-5 의 16 필지
- 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 사업(학교)신구로국교 신설
- 다. 사업시행면적 : 11.111㎡(3.36평)
- 라.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: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
- 마.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
 - 1) 착수년월일 : 사업실시계획인가즉시
 - 2) 준공년월일 : 착수일로부터 2년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(별첨)
 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(별첨)
 3.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

학교명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유자성명
서울신구로 국민학교	영등포구 구로동	165	잡	412 평중 12 평	서울특별시
		166-2	"	816 평중 47 평	"
		-3	"	1,203 평중 554 평	"
		-7	"	21 평	"
		-8	"	1 평	"
		-4	"	301 평중 177 평	"
		-5	"	457 평중 437 평	"
		-9	"	747 평중 653 평	"
		-6	"	441 평중 439 평	"
		-10	"	326 평	"
		176-1	"	491 평중 85 평	"
		177	"	141 평중 134 평	"
		178	"	3 평	"
		178-1	"	240 평중 216 평	"
		179	"	496 평중 210 평	"
		179-89	구	141 평중 22 평	"
		-90	도	72 평중 24 평	"
계			17 필	3,361 평	(11,111㎡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05호
 도시계획사업(서울대공원건설) 실시계획인가
 1. 건설부고시 제 64호('78.3.29) 및 제 320호('78.10.25)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(공원, 도로, 광장조성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조와 동법 제 26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호('77.3.16)의 규정에

의하여 이를 고시함.
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공사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9. . . .

서울특별시장 ◎서울특별시고시제 406호

1. 사업시행위치

- o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재리 2번지의 1,556필지
- o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관문리 하리 352일대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o 종류 - 공원, 도로, 광장조성
- o 명칭 - 서울대공원 건설

3. 사업의 규모

- 1) 시설구역 - 1,460,176.7 평
- 2) 도로
 - 광로 56 : 폭 50 미터 - 연장 1,450 미터
 - 광로 71 : 폭 100 미터 - 연장 550 미터
 - 광로 55 : 폭 50 미터 - 연장 1,150 미터

3) 광 장 - 20,000제곱미터
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
5. 착공 및 준공예정일 : '78.10 ~ '86.12.

6.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

지 : 별 첨

- 7.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조 3항의 관계인, 주소, 성명 : 별첨 (생략)

첨부 1. 토지조서 : 생략

2. 도면 : 생략

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

- 1. 서울특별시고시제 364 호 (79.8.13)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26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(73.4.4)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.

- 2.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함.
- 3. 관계도서는 청구청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코저 합니다.

1979. . . .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시행의 위치 : 중구 신당동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신당7동 소방도로 개설공사

3. 사업의 규모 : 폭 6 m 연장 4.5 m

- 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 (중구 청장)
- 5.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
- 6. 사용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유자 : 별첨
- 7.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: 생략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07 호

도시계획사업 (전기공급설비) 시행허가
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3 호 (77. 4. 12) 로 도시계획시설 (전기공급설비) 결정 및 지적승인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 3. 16)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 9. 17.

서울특별시장

- 1. 사업시행지 : 성동구자양동 510-8 외 5 필지
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전기공급설비), 뚝도변전소
- 3.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 : 중구남산동 3가 11-5
한국전력관리본부 본부장 김차경
- 4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
가. 착수년월일 : 허가일로부터 일주일 이내
나. 준공년월일 : 1980년 7월 31일
- 5.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: 별첨 (별첨 생략)
- 6. 공사설계도서 : 별첨 (별첨 생략)
- 7. 사업시행규모 : 5,510 M²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08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, 공용의청사, 공공공지) 변경, 결정 및 지적승인

- 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도로, 공용의청사, 공공공지)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,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 3. 16)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 9. 17

서울특별시장

○ 결정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신설	공용외청사	도봉구수유동 605 부근	745 M ² (225.4 평)	
신설	공공공지	도봉구수유동 605 부근	1,395 M ² (422 평)	

○ 도로변경 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기점	종점	비고
기정	소로	3		6	140	수유동 605-188	수유동 605-188	
폐지	"	"		"	"	"	"	(폐지)

○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409 호

도시계획시설 (하천및 도로) 결정 및
변경과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하천및 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3.16) 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과 지적승인 하얏기 이를 고시

한다.

2. 관계도서는 관 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 9. 17.

서울특별시 장

○ 하천조서 : 별첨

○ 도로조서 : 별첨

○ 하천조서

구분	시설명	폭원	연장	시점	종점	비고
신설	하천	25-85M	2,712M	마천동 200	오금동 30	

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○ 도로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기점	종점	비고	
기점	변경	소로	1	1	10m	260M	오금동 254	오금동 185	폐지
"	"	"	2	1	8	182	" 268	" 184	"
"	"	"	"	2	"	200	" 509	" 187	"
"	"	"	"	3	"	70	" 188	" 225	"
"	"	"	3	1	6	140	" 174	" 182	"
"	"	"	"	2	"	1,320	" 269	마천동 40	"
"	"	"	"	3	"	780	" 254	거여동 123	"
"	"	"	"	4	"	90	" 246	" 243	"
"	"	"	"	5	"	100	마천동 27	" 103	"
"	"	"	"	6	"	270	" 74	마천동 161	"
"	"	"	"	7	"	210	" 76	" 161	"
"	"	"	"	8	"	20	" 77	" 151	"
"	"	"	"	9	"	20	" 162	" 158	"
신설	"	"	1	1	10	250	오금동 186	오금동 255	
"	"	"	3	1	6	30	" 268	" 266	
"	"	"	"	2	"	1,520	" 140	마천동 40	
"	"	"	"	3	"	720	" 300	오금동 509	
"	"	"	"	4	"	320	거여동 103	거여동 123	
"	"	"	"	5	"	440	마천동 76	마천동 200	
"	"	"	"	6	"	500	" 155	" 199	

별첨도면표시와같음 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 제 410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57 호 (79. 8. 8) 로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 (도로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 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 3. 16) 의 관한 위임

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천호출장소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

1979. 9. 18.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체승인조서

구분	등급	유별	번호	폭원	연장	기점	종점	비고
신설	소로	2		8미터	400미터	명일동산 47	고덕동 262	

별첨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㉠서울특별시고시제 411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 및 하수도) 실시인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10 호(79.8.13)로 도시계획사업 실시에 따른 서류 공람 및 의견정리를 마친 성수동-자양동 간 도로확장 및 하수도 공사를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26 조 건설부 고시 제 41 호(77.3.16)의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 및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 9. 18.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의 시행지

도로 : 성동구성수동 1 가 656-1692

번지 - 성동구자양동 520-1

하수도 : 성동구성수동 1 가 656-1692

- 성동구자양동 520-1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성수동-자양동간 도로개설 및

하수도 공사

다. 사업의 규모

도로 : = 20 미터 = 2,980 미터

하수도 : 별첨(생략)

라. 사업의 시행자 : 성동구청장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착수일 : 인가일로부터

준공일 : 1980. 2. 28.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: 별첨

(생략)

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

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

의한 관계인 주소 설명 : 별첨

(생략)

㉠서울특별시고시제 412 호

도시계획시설(시장)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시장)을

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

법 제 12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(77.

3.16)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
1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
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

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 9.18

서울특별시장

○ 도시계획시설 (시장) 결정조서

구 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 (㎡)	비 고
소매시장	중앙제1시장	성북구중암동3-1342	3,305.8 (1,000평)	신 설

* 별첨도면생략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13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

1. 건설부고시 제 2493 호 ('66.6.21)에 의한 시설결정 및 건설부(서울)고시제 25 호 (1972.11.10)로 지적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(도로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 하였기 도시 계획법 제 25조와 동법 제 26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'77.3.16)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.

2. 관계도서는 영등포구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9. 9.18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시행의위치 : 영등포구 구로동 대림동 지내

시점 : 영등포구 구로동 185 번지앞

종점 : 영등포구 대림동 1016 번지앞

2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구로공단-경수국도간 도로신설공사

3. 사업규모 : 도로신설 B = 20 m
L = 1,300 m, 하수도시설(D = 45 - 90 cm), L = 1,450 m
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 (영등포구청장)

5. 착수 및 준공 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 - 1979.12.31

6. 수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: 별첨 토지조서 참조
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3항의 규정에 의한

관계인 주소 성명 : 별첨 토지조서
참조

(인 가 증)

1. 사업시행의 위치 : 영등포구 구로동 대림동지내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
시점 : 구로동 185 번지앞
종점 : 대림동 1016 번지앞
3. 사업규모 : 구로공단 - 경수국도간 도로신설공사
도로신설 B = 20 m , L = 1,300 m .
하수도지선 (D = 45 - 90 cm)
L = 1,450 m
4. 사업의 시행자 : 서울특별시
5. 사업인가번호 : 서울특별시 고시 제 413 호
6. 사업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 1979.12.31.

7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: 별첨

8.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별첨
위와같이 아래 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별첨 설계도서와 같이 인가함.

1979. 9. 18

서울특별시

(인 가 조 건)

1. 사업실시 완료후 지체없이 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.
2. 별첨계약 설계도서 (평면도) 에 의하여 시공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보
로
지
조
서

번호	소재지		지목	면적 (㎡)	감정단가		지정단가		종보상액	주소		카 성 명	감정 번호
	동명	지번			감정원	세일감정감정평균	평당	㎡당		주	소		
1	신도림동	1086-2	도로	159	180,000	200,000	190,000	23,000	40,232	6,396,888	회기동 102-100	회태 봉	1
2	"	1087-36	"	442	180,000	200,000	190,000	133,000	40,232	17,782,544	등촌동 400-21	차기 순	2
3	"	1087-3	"	83	190,000	200,000	195,000	136,501	41,291	3,427,153	"	"	3
4	"	1088-20	"	7	190,000	210,000	200,000	140,000	42,350	296,450	회기동 102-100	회태 봉	4
5	"	1088-4	"	208	190,000	210,000	200,000	140,000	42,350	8,808,800	"	"	5
6	"	1083-6	"	539	190,000	210,000	200,000	140,000	42,350	22,826,650	"	"	6
7	"	1082-5	잡종지	621	200,000	210,000	205,000	43,500	43,408	26,956,368	신림동 1225-4	신 동 2 원 속	7
8	"	1082-24	"	1,770	200,000	210,000	205,000	43,500	43,408	76,832,160	이촌동 300-11	회태 봉	8
9	"	1081-4	도로	797	210,000	220,000	215,000	150,500	45,526	36,284,222	회기동 102-100	회태 봉	9
10	"	1080-2	"	780	210,000	220,000	215,000	150,500	45,526	35,510,280	"	"	10
11	"	1078-3	답	3	210,000	220,000	215,000	150,500	45,526	136,578	신도림동 917-3	회 체 화	11
12	"	1079-3	"	350	210,000	220,000	215,000	150,500	45,526	5,934,100	"	"	12
13	"	1078-2	"	155	210,000	220,000	215,000	150,500	45,526	7,056,530	"	"	13
14	"	1077-7	"	627	210,000	220,000	215,000	150,500	45,526	28,544,802	남창동 30	수 명 4 인 선	14
15	"	1027-27	"	959	220,000	225,000	222,500	155,750	42,114	45,182,324	신설동 94-5	회 체 화	15
16	"	1028-1	"	595	220,000	225,000	222,000	155,750	42,114	28,032,830	신도림동 835-15	이 선 기	16
17	"	1032-36	토1	303	230,000	230,000	230,000	161,000	48,702	63,458,706	신길동 303-2	김 학 1 인 자	17
18	"	1032-31	대	13	230,000	230,000	230,000	161,000	48,702	833,126	남가파동 124-357	정 영 자	18-1
19	"	1032-40	"	7	230,000	230,000	230,000	161,000	48,702	340,914	신도림동 1015-48	이 덕 준	18-2

번호	소재지	면적(㎡)	감정단가		지정단가	총부상액	주소		자평	감정번호				
			지목	감정원			제일감정	감정평균			성명			
20	신도림동	1032-37	대	6	230,000	230,000	230,000	161,000	48,702	292,212	신도림동 1032-12	신기순	18-3	
21	"	1032-36	"	9	230,000	230,000	230,000	161,000	48,702	438,312	청과동 1가 89-38	최복길	18-4	
22	"	1032-35	"	11	230,000	230,000	230,000	161,000	48,702	535,722	신도림동 893-74	이명일	18-5	
23	"	1032-34	"	12	230,000	230,000	230,000	161,000	48,702	584,424	동교동 185-23	곽영필	18-6	
24	"	1032-33	"	13	230,000	230,000	230,000	161,000	48,702	133,126	사적동 311-63	우진식	18-7	
25	"	1032-32	"	16	230,000	230,000	230,000	161,000	48,702	771,232		김광후	18-8	
26	"	1032-2	"	12	230,000	230,000	230,000	161,000	48,702	584,424	가회동 205	한원표	18-9	
27	"	1032-21	도로	767	230,000	230,000	230,000	161,000	48,702	37,354,434	대방동 375-1	학교법인 학원학회	19	
28	"	1032-30	대	43	230,000	230,000	230,000	161,000	48,702	2,094,186	답십리동 58-26	김영인	19-1	
29	"	862-2	답	2,331	230,000	230,000	230,000	161,000	48,702	113,524,362	신대방동 605	박길윤	20	
30	"	862-8	대	18	230,000	230,000	230,000	161,000	48,702	876,636	경남합양군서하면 물곡리 1272	최상준	20-1	
31	"	870-2	답	100	230,000	230,000	230,000	161,000	48,702	4,870,200	신도림동 931	김창환	21	
32	"	870-3	"	13	230,000	230,000	230,000	161,000	48,702	633,126	"	"	22	
33	"	1019-30	"	10	230,000	230,000	230,000	161,000	48,702	487,020	전주시노형동 2304	양계영	23	
34	"	1019-3	"	13	230,000	230,000	230,000	161,000	48,702	633,126	청과동 2가 55-3	임동근	24	
35	"	1019-14	"	122	230,000	230,000	230,000	161,000	48,702	5,941,644	신도림동 1016	한재수	25	
36	"	1019-11	도로	100	230,000	230,000	230,000	161,000	48,702	26,737,398	"	929-2	강민석	26
37	"	1018-11	답	175	240,000	240,000	240,000	168,000	50,822	49,549,500	"	939	이현기	27
38	"	988-41	"	208	250,000	250,000	250,000	175,000	52,937	11,010,896	신길동 82	김창수	30	
39	"	988-2	대	248	250,000	250,000	250,000	175,000	52,937	13,128,376	신도림동 986-2	윤필의	31	

공 고

공 랑 개 요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308 호

도시계획사업 (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) 시행공람공고
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6 호 (79. 5. 15) 및 동고시 제 393 호 (79. 9. 6) 로 변경결정 및 변경지적승인된 강남구서초동 일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(외국인 공판단지) 구간내 저축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(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) 을 시행코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 3. 16) 권한위임중 내부위임 및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한다.
- 2.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- 3. 본 공고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로 송달될 것 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같음한다.

1979. 9. 14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시행지 : 강남구 서초동 일대
-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) 시행
- 다. 사업의 규모 (면적) : 92,667㎡ (28,031 평)
- 라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- 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 - 1) 착수에정일 : 1980. 1. .
 - 2) 준공예정일 : 1980. 12. .
- 바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 일간
- 사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(별첨)
- 아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주소, 성명
- 자. 기타사항 : 기타.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(전화 56-8972) 로 문의바람.

위 치	지 번	지 목	지 적	소 유 소	자 성 명	이 주	해 관 소	제 성 명
강남구서초동	263-8	대	231㎡	서울특별시 장				
"	263-9	"	76	"				
"	261-20	"	248	"				
"	261-9	전	281	"				
"	260-1	"	1,676	"				
"	255-8	"	245	"				
"	255-7	"	582	"				
"	256-2	"	800	"				
"	257	"	618	"				
"	257-2	"	281	"				
"	산23-3	임야	85	"				
"	산23-11	"	33	"				
"	산23-9	"	50	"				
"	산23-8	"	198	"				
"	263-2	대	559	"				
"	261-16	전	562	"				
"	271-2	답	307	영등포구로동공영주택 79	김 선 호			
"	272	"	3,326	양재동 318-27	허 증 남			
"				역삼동 288	윤 보 남			
"	268-3	전	1,638	영등포구도림동 133-9	이 찬 호			
"	267	"	1,640	입구동 230-9원더A PTB7-205	한 번 수			
"	266-1	"	2,407	신설동 103-3	이 영 배			
"	266-2	"	2,109	청과동 13-3	한 순 옥			
"	266-3	"	529	청과동 13-3	"			
"	246-8	답	58	이태원 60-4	이 용 태			
"	261-4	전	1,392	신당동 282-79	정 달 권			
"				신림동 98-134	이 성 준			
"				남가좌동 135-2	강 동 회			

위 치	지 번	지 목	지 적	주 소	유 소	자 성 경	이 주	해 관 소	인 성 명
강남구서초동	261-5	전	790㎡	서초산 23		변연홍			
"	261-6	"	1,312	동작동 307반포A 78-304		구자윤			
"	248-12	답	828	사직동 96-3		심광주			
"	247-	"	402	성북동 50		이해룡			
"	248-16	"	235	여의도동 1-45		백정현			
"	261-2	전	1,137	양재동 6-1		곽상빈			
"	261-10	대	813	성수 2가 249-7		김영훈			
"	261-1	전	1,498	필동 2가 71-3		김영환			
"	260-3	"	340	장위동 231-348		민병훈			
"	260-2	"	397	이태원 44-5		이원모			
"	260	"	519	도곡동영등 APT8-110		이근배			
"	255-6	"	301	후암동 142-1		변중근			
"	255-9	"	830	"		"			
"	255-5	"	1,250	계기동 122-236		김태환	청주시북문로 1가 9-3		
"	255-3	"	1,517	망원동 399-42		김중익	청송읍		
"	263-5	"	770	이태원 44-5		강영숙			
"	263-4	"	360	"		"			
"	264	"	83	석판동 340-9		권형진			
"	263	"	380	성북동 125-6		임순봉			
"	263-1	"	1,160	신사동 451		안영진			
"	261-12	"	268	후석동산 67-2		우영식			
"	261-13	"	159	홍파동 14-3		홍성표			
"	261-14	"	132	마장동 568-4		김예숙	안양시박달동 111-2		
"	261-15	"	40	"		유병실	삼아알미늄주식회사		
"	261-14	"	132	"		"	중구남대문로 2가 9-1		
"	261-15	"	40	"		김예숙	국민은행 (북악지점)		
"	261-15	"	40	"		"	안양시박달동 111-2		
"	261-15	"	40	"		"	삼아알미늄주식회사		

위 치	지 번	지 목	지 적	소 유 자		이 해 관 제 인	
				주소	성명	주소	성명
간남구서초동	261-19	전	542㎡	청담 241 해청 APT 마동 512	최지영		
"	259	"	461	이대원 44-5	이원모		
"	261-1	"	1,507	"	강영숙		
"	255-2	"	1,971	양재 27	김창용		
"	258	"	1,680	물지로 4 가 263	권경희		
"	258-1	"	588	인현동 1 가 43	이기봉		
"	255-1	"	340	동선 3 가 212-6	정주화		
"	254-5	"	389	삼성동 172-8	황운주		
"	257-3	"	991	연희동 237-14	정연석	다포구서교동 404-7	최봉하
"	257-5	"	55	"	정연석	"	최봉화
"	248-15	담	9	이대원 647	백용찬		
"	산 23-5	임야	3,669	논현동 145-7 한강로 3 가 65-413 법동 461-121	이강희 이창희 김만수		
"	산 21-13	"	744	연희 237-14	정연석		
"	산 23-1	"	15,015	원효로 1 가 29-2	신근일	마포구연리동 118- 중구남대문로 1 가 14	임승일 조홍은행
"	산 27	"	1,686	계기동 122-236	김태환		
"	산 29-2	"	14	서초동 242-6	이현중		
"	산 21-2	"	26	"	이현구		
"	산 21-2	"	26	충정로 3 가 3-8	장강재		
"	산 28-1	전	479	마장동 568-4	김예숙		
"	산 28-1	임야	976	삼선 5 가 26 해화동 15-132 역촌동 40-10	김익진 안창문 허천옥		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311 호

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에정
지지정공고

1. 서울특별시 공고 제 223 호 (79.7.29) 로 환지계획공람공고한 영동제 1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환지에정지에 대하여,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9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인가 하고,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를 변경 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.
2. 환지에정지 변경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있으며,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합니다.

1979.9.17

서울특별시 장

(환지에정지변경지정 내역)

- 가. 사업명 : 영동제 1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
- 나. 변경면적 : 24,877 평
- 다. 변경위치 : 강남구잠원동 112 번지의 149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312 호

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

1. 영동제 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아파트지구내 일부 환지에정지에 대하여 환지계획변경사유가 발생되었기,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및 제 55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요자 동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 일간 공람에 공한다.
2. 환지계획변경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본공고 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한다.

79.9

서울특별시 장

(환지계획 변경내역)

- 가. 사업명 : 영동제 2 토지구획정리사업
- 나. 변경면적 : 1,852.3 평
- 다. 변경위치 : 강남구압구정동 153 의 3 호의 6 필지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314 호

공인개작사용승인공고

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

개작사용 승인 하였고 서울특별시 공
인조래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.

1979.9.

서울특별시 장

1. 공인명 : 가. 마포구청장인





나. 마포구청장계인

다. 마포구청장인 (호적, 병
사용)

라. 마포구청장계인 (서민봉
사실)

2. 사용개시일 : 1979.10.1

3. 공인의 인영 :

인 영		인 영	
공인명	마 포 구 청 장 직 인	공인명	마 포 구 청 장 직 인 (호적병사)
인 영		인 영	
공인명	마 포 구 청 장 계 인	공인명	마 포 구 청 장 계 인 (호적병사)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315 호

도시계획사업 완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7 호 (78.4.26) 로 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 조 1 항 및 동법제 46 조 3 항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3.16)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다 음

- 가. 사업집행지 : 서대문구 신촌동 131-21
- 나. 사업명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
- 다. 허가번호및일시 : 서울특별시 고시 177 호 (78.4.26)
- 라. 시행면적 : 993 (300.9 평)
- 마. 사업시행자 : 서대문구신촌동학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이 천 환
- 바. 준공년월일 : 79.9.20

2.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9.20
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316 호

도시계획사업 완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 호 (79.1.25) 로 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 (여객자동차정류장) 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 조 1 항 및 동법 제 46 조 3 항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3.16)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다 음

- 가. 사업집행지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기려동 203-10 의 3 필지
- 나. 사업명 : 도시계획사업 (여객자동차정류장)
- 다. 허가번호및일시 : 서울시고시 27 호 (79.1.25)
- 라. 시행면적 : 1,578 ㎡
- 마. 준공년월일 : 79.9.20
- 바. 사업시행자 : 서대문구북기려동 203-10 서부운수 대표 원 덕 석

2.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
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교위 공고제 49 호

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공고

교육공무원 공로퇴직 수당지급규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공로퇴직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. 수당지급 대상자

가. 공립 초·중등교원으로서 지급일 현재 다음 연령과 경력에 해당하는 자.

가. 연 령

- 1) 60 세 이상
- 2) 신체, 정신상 장애로 퇴직을 원하는 자는 55 세 이상

나. 경력 (교육경력, 교육연구경력, 교육행정경력 통산)

- 1) 30 년 이상
- 2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0 년 이상

- 가) 재직중 훈장을 받은 자
- 나) 재직중 각급기관의장의 표창을 받은 자

다) 재직중 시·도단위이상의 공인된 단체의장의 표창을 받은 자

2. 수당지급일 : 1979.11.30

3. 신청기간 : 1979.10.1-10.15 (15 일간)

4. 신청절차

소정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구비하여 신청인의 소속기관 및 감독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한다.

5. 지급액

기준 호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다 지급배수를 곱한 금액

6. 지급절차

가. 대상자 결정통지

지급 대상자의 근무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구청장 또는 고등학교장에게 통지한다.

나. 수당지급장소 :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

7. 기타사항

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교육구청 또는 당교육위원회에 문의할 것.

1979.9.17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 육 감